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4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임미애·이병진·최기상

민병덕 • 신정훈 • 김용민

조계원 • 복기왕 • 박수현

박희승·박해철·김 현

오기형 · 김병기 · 이광희

오세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을 목적으로하는 법률로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광 및 풍력)의 입지 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시설(태양 광 및 풍력)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, 이로 인해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. 더불어,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

있다는 지적도 있음.

이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,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3(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) ①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 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인근 주민 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, 재해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.
 - 1. 태양광 설비[단, 지붕형 태양광(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) 설비는 제외한다]: 주거지로부터 최대 10m 이내
 - 2. 풍력 설비: 주거지로부터 최대 1,000m 이내
 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예외를 두는 경우 관할 지방자

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치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, 그 밖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태양광 및 풍력 설비 입지의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리의 예외를 두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치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, 그 밖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